제72회 설계변경심의 의견서

공 사 명	연건동185-2~종로5가194-1번지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
일 시	2016년 12월 19일(월) 15:00~15:40

1. 제경비의 적정성 검토

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정산반영

2. 단가산출의 적정성 검토

○ 타이튼 철거공(250mm-야간)은 현장내용상 절단 및 철거로 구분적용이 타당

○ 주·야간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중 증가분에 대해서는 개소당 나사조립의 품으로 변경 적용 검토 요망

3. 수량산출의 적정성 검토

○ 급수관(야간) 공종의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(13~20mm) 내역수량과 분수관링크립 삽입공 내역수량 불일치

○ 부대공 소형공사안내판 설치 철거 수량은 정산하여 반영함이 타당

심 의 위 원 회	심의위원장 : 공사감독2처장	남 궁 석
	심 의 위 원 : 공사감독2처	박 태 문
	심 의 위 원 : 공사감독2처	이 진 용
	심 의 위 원 : 공사감독2처	조 용 호
	간 사 : 공사감독1처	임 준 영